변경 대비표

☐ **대상펀드명 :**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[주식]

☐ **변경 사항:** ① 제1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☐ **효력발생일**: 2023. 7. 21.

☐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**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제 1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준으로 기재	- -	**2023. 6. 26. 기준** **2023. 5. 31. 기준**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**2023. 6. 26. 기준**
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**2023. 6. 30. 기준**
매입 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 : 제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 : **2(3)영업일**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 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 : 제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4(4)영업일에 지급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 : **2(3)영업일** 기준가격으로 **4(4)영업일**에 지급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	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**600 만원**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**900 만원** 한도로 12%**(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**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**2023. 6. 30. 기준**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**2023. 6. 30. 기준**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**로 하며,**

		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**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의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**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	**증권대차거래 목적 기재**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**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의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**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(생 략)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(생 략)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 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**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

		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**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3 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표준편차 변경	표준편차 : 22.26%	**표준편차 : 16.69%**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,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**2(3) 영업일**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,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(4)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**2(3) 영업일**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4(4)영업일**에 환매금액 지급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1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준으로 기재	- -	**2023. 6. 26. 기준** **2023. 5. 31. 기준**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아래 ※별 첨 참조 5) 퇴직연금제도의 과세 ③ 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(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300 만원 이내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「소득세법」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**아래 ※별 첨 참조** 5) 퇴직연금제도의 과세 ③ 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**600 만원**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**900 만원** 한도로 12%**(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**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「소득세법」제 5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1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**2023. 6. 26. 기준**
1. 재무정보 □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	**증권대여 또는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 내역** **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〉 및 〈주식의 매매회전율〉 기재**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**2023. 6. 26. 기준**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1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**2023. 6. 26. 기준**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**2023. 6. 30. 기준**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제 24 기(2021.12.31) 제 23 기(2020.12.31)	**제 25 기(2022.12.31)** **제 24 기(2021.12.31)**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**2023. 6. 30. 기준**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 5 영업일	**5 영업일**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 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**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**

		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	**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**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·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(생 략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~ ⑦ (생 략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	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·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(현행과 같음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**(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**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**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

			있다는 사실
		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	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**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		⑩ (생 략)	⑩ (현행과 같음)

※ **별 첨**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
<tr><td>납입요건</td><td>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
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</td></tr>
<tr><td>수령요건</td><td>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
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td></tr>
<tr><td>공제제도</td><td>
<table>
<tr><th>종합소득금액
(총급여액)</th><th>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
(퇴직연금 포함)</th><th>세액공제율</th></tr>
<tr><td>4.5천만원 이하
(5.5천만원 이하)</td><td rowspan="2">600만원
(900만원)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4.5천만원 초과
(5.5천만원 초과)</td><td>12%</td></tr>
</table>
※지방소득세 별도
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</td></tr>
<tr><td>연금수령시 과세</td><td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
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</td></tr>
<tr><td>분리과세한도</td><td>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
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
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</td></tr>
<tr><td>연금외수령시 과세</td><td>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</td></tr>
<tr><td>해지가산세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부득이한
연금외 수령 사유</td><td>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
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
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
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td></tr>
<tr><td>부득이한
연금외 수령시 과세</td><td>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</td></tr>
<tr><td>연금계좌 승계</td><td>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</td></tr>
</table>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전]

<table>
<tr><th>종합소득금액
(총급여액)</th><th>세액공제 대상
납입한도
(퇴직연금 포함)</th><th>50세 이상
세액공제 대상
납입한도
(퇴직연금 포함)</th><th>세액공제율</th></tr>
<tr><td>4천만원 이하
(5.5천만원 이하)</td><td rowspan="2">400만원
(700만원)</td><td rowspan="2">600만원
(900만원)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1억원 이하
(1.2억원 이하)</td><td rowspan="2">12%</td></tr>
<tr><td>1억원 초과
(1.2억원 초과)</td><td colspan="2">300만원
(700만원)</td></tr>
</table>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 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<table>
<tr><th>종합소득금액
(총급여액)</th><th>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
(퇴직연금 포함)</th><th>세액공제율</th></tr>
<tr><td>4.5천만원 이하
(5.5천만원 이하)</td><td rowspan="2">600만원
(900만원)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4.5천만원 초과
(5.5천만원 초과)</td><td>12%</td></tr>
</table>

※지방소득세 별도

〈삭 제〉

〈신 설〉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